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등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4569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등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등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하여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활 정착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6조¹⁾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이민자 등에게 사회 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0조²⁾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12조³⁾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한국어교육 현황 >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실적(2024년)
방문한국어 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218개 센터 10,748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읽기·쓰기·듣기 등 7개의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231개 센터 25,197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215개 센터 6,409명

자료: 여성가족부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 8. (생략)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⁴⁾는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에서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3개월~1년)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⁵⁾’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 학교 단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미성년)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9년 264,626명에서 2023년 308,40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8세 미만 인구 중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2%에서 2023년 4.1%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5)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은 교육청 협약 및 운영기관(지역대학, 복지시설 등 우수한 지역 자원과 연계)으로 2024년 기준 29개임.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8세 미만)	8,390,746	8,124,654	7,898,418	7,673,145	7,429,736
다문화 자녀	264,626	275,990	289,529	299,440	308,402
다문화 비중	3.2%	3.4%	3.7%	3.9%	4.1%

주 1)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을 토대로 외국인주민 미성년 자녀 현황을 나타낸 것임.

2) 다문화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서 미성년자를 집계한 것임.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위탁기관을 별도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학교적응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존 한국어 교육체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교육기관 확대에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에도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전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9
